

의안번호	2214977
의 퇴 인	정혜경 의원
회 답 일	2026.3.18.
추계번호	25B6748
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(정의)	이 법에서 “교원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4. <u>영재교육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원</u>	의무규정
2	안 제3조(정치활동의 금지)	<삭제> 교원의 노동조합(이하 “노동조합”이라 한다)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됨	의무규정
3	안 제4조(노동조합의 설립)	제2조제3호· <u>제4호</u> 에 따른 교원은 개별학교 단위, 시·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4	안 제6조(교섭 및 체결 권한 등)	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, 근무조건, 후생복지 등 경제적·사회적 지위 향상 <u>및 교육정책</u> 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짐(제1항) 1.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경우: 교육부장관, 시·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·경영자. 이 경우 사립학교 설립·경영자는 전국 또는 시·도 단위로 <u>지체 없이 연합하여</u> 교섭에 응하여야 <u>하고, 시·도 교육감은 이를 지도·감독하여야 함</u>	의무규정
5	안 제7조(단체협약의 <u>이행</u>)	교육부장관, 시·도 교육감 및 사립학교 설립·경영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법령·조례·교육규칙·정관·학교규칙의 제·개정 또는 예산의 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·개정 또는 편성 절차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(제1항) <u><삭제>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·도 교육감, 국·공립학교의 장 및 사립학교 설립·경영자는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함(제2항)</u>	의무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미첨부 근거 규정
1, 3	안 제2조(정의) 안 제4조(노동조합의 설립)	×	• 미첨부 -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- 본문 참조
2	안 제3조(정치활동의 금지)	—	• 미대상 - 개정안은 교원의 노동조합이 어떠한 정치활동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하여 교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이므로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4	안 제6조(교섭 및 체결 권한 등)	—	• 미대상 -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할 수 있는 사항에 교육정책을 포함하는 내용이므로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- 또한, 개정안은 사립학교 설립·경영자로 하여금 전국 또는 시·도 단위로 연합하여 지체 없이 교섭에 응하도록 하고, 시·도 교육감이 이를 지도·감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, 현재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
5	안 제7조(단체협약의 이행)	×	• 미첨부(제1항) -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- 본문 참조
		—	• 미대상(제2항) - 개정안은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·도 교육감, 국·공립학교의 장 및 사립학교 설립·경영자의 단체협약의 내용 중 위임 사항 등에 대한 성실 이행을 요구하던 현행법의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므로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
- (안 제2조 및 제4조) 현행법은 교원으로 하여금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협의·교섭, 고충처리, 안전·보건활동 등 법률

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·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⁾

- ‘근무시간 면제제도’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단체협약 또는 정부 교섭대표의 동의하에 근무시간 중 일정 범주의 활동을 보수의 손실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
- 개정안은 영재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원을 교원의 정의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므로, 개정안의 시행으로 영재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원도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어 근무시간 면제자의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
- 다만, 개정안의 시행으로 근무시간 면제제도 대상자가 확대될 경우 대체인력의 채용으로 인해 국가 재정의 추가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대체인력의 채용 여부 및 채용 형태는 기관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진다는 점에서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대체인력의 채용 여부와 규모, 형태 및 임금 등을 추정하기 곤란하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음

□ (안 제7조제1항) 개정안은 ‘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·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도록’ 규정한 현행법을 ‘교육부 장관, 교육부장관, 시·도 교육감 및 사립학교 설립·경영자로 하여금 교육 규칙, 정관, 학교 규칙의 제·개정 또는 예산의 편성을 요하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’ 변경하는 내용임

1) 제5조의2(근무시간 면제자 등) ① 교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의 협의·교섭, 고충처리, 안전·보건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·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.

②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(이하 "근무시간 면제 한도"라 한다)를 정하기 위하여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「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」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.

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를 기준으로 조합원(제4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말한다)의 수를 고려하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, 교섭구조·범위 등 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·의결하고,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.

1. 제2조제1호·제2호에 따른 교원: 시·도 단위

2.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원: 개별학교 단위

④ 제1항을 위반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임용권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.

- 따라서 개정안의 시행으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예산상 변화가 수반될 경우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는 장래에 발생할 재정변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 곤란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예승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